

【별첨 1】

참가신청서

업 체 명		대표자명	
고용보험 관리번호		사업자 등록번호	
고용형태	☐ 정규직 ☐ 계약직	업체현황	☐ 완제제조 ☐ 원부자재제조 ☐ 유통/무역 ☐ 기계/치공구/약품 ☐ 기타()
성명[참가자]		부서/직책	/
주민번호	-	학력(졸업)	☐ 중학교 ☐ 고등학교 ☐ 대학[2년제] ☐ 대학교[4년제] ☐ 대학원[석사] ☐ 대학원[박사]
전 화		핸 드 폰	
팩 스		E-Mail	
주 소	[-]		

- 희망교육내용 외 나머지 항목은 빠짐없이 필히 작성하셔야 참가 신청이 이루어짐
○ 신청기간 : 2017. 4. 13(목) 13:00까지
○ 신청문의 · (재)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사업지원팀 신섬희 사원
· Tel) 051-979-1886 Fax) 051-979-1885 E-mail) ssum1023@shoenet.org

상기와 같이 귀 기관에서 개최하는 「신발 생체역학 성능평가 이해와 실습」에 참가를 신청합니다.

2017. . .

【별첨 2】

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서

-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(HRD-Net)에 수집 · 관리하고 있습니다.
 -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: 훈련비용 지원,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,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실적 · 성과 평가 등에 활용
 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(필수)/지문(선택)
 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직업능력개발정보망(HRD-Net)에서 수집. 계속 관리
-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,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.
-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·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은 위 1~3의 내용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훈련과정명 : 신발 생체역학 성능평가 이해와 실습	
훈련기간 : 2017년 4월 14일 (1일간)	
성 명	생년월일

2017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

(재)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(이하, “공동훈련센터” 라 한다)와 _____ (이하, “협약기업” 이라 한다)는 「고용보험법」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「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관의 역할) 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」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및 「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」(이하 “규칙” 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.

1.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,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조사,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
2. 협약기업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·운영 등 지원
3.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,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적극 노력한다.

제3조(훈련과정운영비에 관한 약정) ① 공동훈련센터는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1.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
2.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

② 공동훈련센터는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 제20조에 따라 협약기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기업에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협약기업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운영비를 공동훈련센터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.

제4조(협약서의 체결) ①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1.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이 명시적으로 본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
2. 협약기업이 공동훈련센터에서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(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.)를 참여시킨 경우. 이 때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의 체결시점은 공동훈련센터가 해당 근로자가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실시신고를 공단에 하고 이를 공단이 수리한 날로 본다.

②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정한 전산시스템에 공동훈련센터가 관련 사항을 등록한 것으로 제1항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성실의무)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기간)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월 일

(공동훈련센터)

(참여기관)

(재)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

주 소 :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

주 소 : _____

382로 14번길 55

대표자 : 김 병 추

(인)

대표자 : _____

(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【별첨 4】

<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>

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					
회사명				대표자명	
주소(본사)	우편번호(-)				
업 태		업 종		상시근로자수	
담당자	성 명			HRD부서명	
	전화번호	사무실: 휴대 폰:		FAX	
	전자우편 주소			홈페이지 주소	
고용보험관리번호				사업자 등록번호	
【 기타 사항 】					